

## 2026년도 기업자격 정부인정 신규모집 공고

기업 주도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2026년도 기업자격(구. 사업주자격) 정부인정 신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12일

**HRDK**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### 1. 사업 목적

-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업의 기술향상 촉진

### 2. 모집대상

-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
- 기업자격 정부인정을 공단으로부터 최초 확인받고자 하는 단체 등

### 3. 자격 요건

#### 【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고시(제2024-61호)】

제9조(사업주자격의 인정 요건)에서 사업주자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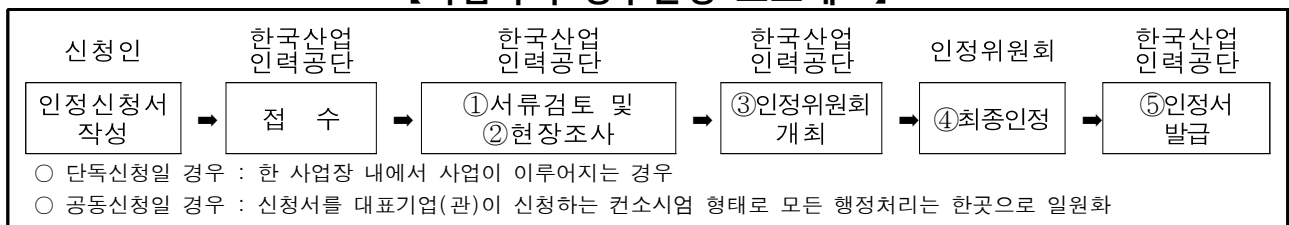
1.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일 것
2. 자격 종목, 검정 방법, 합격 결정기준 및 응시자격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자격으로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
3. 사업주자격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, 자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
4. 출제기준, 채점기준 및 감독 등 공정한 검정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
5. 합격자에 대하여 승진·승급·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
6. 자격 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
7. 자격 검정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

## 4. 신고서 접수

-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9. 30.(화), 약 8개월 간
- 접수방법 : 큐넷(Q-net) 신청접수 게시판(기업자격 신청접수 게시판)
  - ※ 큐넷(www.q-net.or.kr)-자격정보-기업자격 정부인정- 기업자격 접수신청 게시판
- 구비서류
  - (서식)기업자격 인정신청서(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고시)
  - (서식)기업자격 정부인정 실시계획서
  - 기업자격 검정실시규정(기업 내부규정)
  - (서식)기업자격 정부인정 신청현황(엑셀)
- \* 관련 서식은 [별첨 기업자격 정부인정 관련 신청서.zip] 참조

## 5. 인정 절차

### 【기업자격 정부인정 프로세스】



- (서류검토) 서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, 자격 요건\* 및 제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현장 조사 대상기업 선정
  - \* 실업자훈련이 주된 경우, 학원 등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 사업 목적 및 인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참여 제한
- (현장조사) 내용전문가, 체계전문가 등 직무 분야별로 구성된 3명 이상의 조사위원이 대상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 실시
- (인정위원회)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하여 인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최종 인정기업 확정
  - ※ (이의신청)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심의 결과는 90일 이내 통보
- (최종인정) 인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종 결과를 대상기업에 통보
  - ※ 인정 유효기간은 인정일부터 3년이며, 자격요건을 유지충족하는 경우 3년마다 인정 연장 가능

## 6. 심사 일정

- 분기별 접수분(매 분기 말일 접수 마감)을 묶어 분기마다 인정 심사 진행
  - 서류검토를 통과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내 현장심사 진행
  - 인정위원회에서 심의 후 인정 여부 확정

### [ '26년 현장조사 및 인정위원회 분기별 진행 일정 ]

- (1) 1분기 접수(3.31(화)까지 도달분) → 서류검토(4월1주) → 현장조사(4월2~3주) → 인정위원회(4월4주)
- (2) 2분기 접수(6.30(화)까지 도달분) → 서류검토(7월1주) → 현장조사(7월2~3주) → 인정위원회(7월4주)
- (3) 3분기 접수(9.30(수)까지 도달분) → 서류검토(10월1주) → 현장조사(10월2~3주) → 인정위원회(10월4주)

\* 접수물량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.

\* 해당 분기 접수건이 3개 사 미만일 경우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선정하고, 물량이 과다한 경우 분기 중 추가 선정 가능

## 7. 인정 기업 혜택

- BEST-HRD 민간부문 기업 선정 가점 우대
- 사업체에 대한 사업주 자격검정 관련 상담 및 자문 등의 컨설팅 지원
- 기업자격 정부인정서 발급
- '기업자격증' 내 고용노동부 및 공단 로고 사용 지원
- 기업자격 정부인정 우수 사업체에 대한 포상
  - ※ 기업자격정부인정 우수사례 선정(연 1회, '26년 6월 중 공모하여 9.10(목) 시상 예정)

## 8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서(신청서)를 제출하여 선정·운영된 경우에 취소 처리함
  - ※ 인정 이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 기업 자격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.

- 기업자격 정부인정 신규 신청과 관련하여 사전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송부
  - 방문·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 상담 가능(신규 희망기업 우선 실시)
- 문의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품질기획부 사업담당자  
(☎ 052-714-8366, ✉ uaakim@hrdkorea.or.kr)

## 참 고

## 사업주자격 인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(규정 제9조제2항)

심사요건	심사항목	심사기준
1.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일 것	가. 검정대상	1) 자격검정 운영 사업주와 검정대상자인 근로자와 관련성이 있을 것
2. 자격 종목, 검정 방법, 합격 결정기준 및 응시자격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자격으로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	가. 검정내용	1) 자격종목: 해당 사업장의 직무내용과의 관련성 2) 검정방법: 필기검정, 실기검정 3) 합격기준: 자격수준, 등급 4) 응시자격: 자격수준, 등급, 교육과정
3. 사업주자격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, 재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	가. 검정실적	1) 검정실적(계획수립부터 자격증 교부)의 적합성 2) 시행계획의 수립 여부 3) 시행시기: 연간 시행횟수 및 시기 4) 시행장소: 응시대상자, 시행횟수, 검정방법과의 관련성
4. 출제, 채점 및 감독에 관한 기준 등 공정한 검정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	가. 검정기준	1) 출제: 출제위원 위촉, 출제방법, 문제선정 2) 채점: 채점위원 위촉, 채점방법 3) 감독: 감독위원 위촉, 감독자 교육 4) 그 밖에 기회 균등, 검정절차의 비밀유지 등에 관한 규정
5. 합격자에 대해 승진·승급·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	가. 우대규정 나. 우대실적	1) 우대규정: 사업주자격검정실시규정, 취업규칙, 인사규정 등 자격취득자 우대 규정 제정의 적합성 2) 우대실적: 기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, 승급 등 우대의 적합성(규정에 따라 우대한 실적이 있어야 함)
6. 자격 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	가. 검정목적	1) 자격관리 및 운영목적의 적합성(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야 함)
7. 자격 검정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	가. 운영목적 및 검정내용	1) 운영목적 및 검정의 내용: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지 여부